



# 의료취약계층 치료비 지원 협약서



한국원자력의학원[이하 “갑” 이라 한다]과 서울특별시 성북구[이하 “을” 이라 한다]간에 다음과 같이 환자의 진단검사비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1조 (목적)

“갑” 은 “을” 을 통해 추천 받은 대상자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“갑” 의 의료비 지원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하고, 진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료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지원 대상 및 기준)

“갑” 은 “을” 이 추천하는 대상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대상을 지원한다.

1. 지원대상
  - 가.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
  - 나. 재산기준이 극빈하다고 인정되는 자(최저생계비 200% 이하)
2. 지원기준
  - 가. 모든 임상과 진단검사비
  - 나. 외래 치료비 및 입원비

## 제3조 (지원 범위 및 시기)

“갑” 이 진료비를 지원하는 범위 및 시기는 다음과 같다.

1. 진단 및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
2. 대상자 1인 최대 후원금액은 100만원 내외
3. 2016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나 지원기금 조기 소진될 경우 사업 종결(지원기금 총액 1,000만원)

## 제4조 (진료지원)

“갑” 은 사전에 “을” 과 협의해 진료지원 시기 및 인원수를 기금 소진시 까지 결정할 수 있다.

## 제5조 (환자 추천 방법)

1. “을” 은 제2조 1항, 2항에 해당되는 환자 및 보호자와 면담, 구비서류와 함께 의료비 지원 추천서를 작성해 “갑” 에게 팩스, 이메일, 우편 접수 등을 통하여 의뢰한다.

2.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, 단 지원 의뢰 환자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.

가. 국민기초생활수급자

- 1) 의료비 지원 추천서 1부
- 2) 타병원 진료의뢰서(초진시 환자 원본 지참 필수) 1부
- 3) 수급자 증명서 1부, 4) 주민등록등본 1부

나. 일반 저소득자

- 1) 의료비 지원 추천서 1부, 2) 주민등록등본 1부
- 3)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증(영수증) 1부
- 4)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
- 5)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서(해당자) 1부

**제6조 (지원결과 통보)**

“갑”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환자의 결정공문을 작성하여 접수 후 2일 이내에 “을”에게 통보한다.

**제7조 (진료)** “갑”은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.

**제8조 (의료비 부담)**

“갑”은 환자의 본인 부담 총액 중에서 “을”에게 통보된 지원 금액을 진료비로 부담하고,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.

**제9조 (진료 결과 회신)**

“갑”은 의료비 지원 결과보고서를 “을”에게 회신한다.

**제10조 (협약의 해지)**

1. 본 협약은 “갑”, “을” 쌍방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.
2. “갑”은 “을”이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3. “갑”과 “을”은 의료 관련 법규 또는 규정 등에 위배되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,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**제11조 (협약서 작성 및 해석)**

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“갑”과 “을” 쌍방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하며,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의의가 있는 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2016. 2. .

“갑” : 한국원자력의학원장

“을” :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

최 창 운 (인)

김 영 배 (인)

